

대학스포츠 운영규정



운영 규정 목차

제1절 총 칙	1
제2절 스포츠윤리와 아마추어리즘	3
제3절 협의회 및 대학	5
제4절 학생선수 선발 및 학사관리	6
제5절 경기운영	7
제6절 체육부·운동부의 운영 및 경기지도자 채용	8
제7절 재정 및 마케팅	11
제8절 포상 및 징계	14
부 칙	17

KUSF 「대학스포츠 운영 규정」

〈제정 2015. 1. 21.〉

〈개정 2016. 1. 29.〉

제1절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립 취지에 따라 대학스포츠 학사관리와 경기운영의 정상화 및 선진화를 이루고, 대학스포츠 구성원의 권익을 보호·신장함으로써 대학스포츠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학” 이란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가운데 협의회의 정관에 의해 회원 자격을 취득한 학교를 말한다.
2. “대학스포츠”란 대학 재학 학생선수의 협의회 주최·주관 또는 승인 대회 참가 및 이를 위한 훈련 등과 관련하여 행하는 대학 운동부와 동아리의 교내외 활동을 말한다.
3. “학생선수”란 제1호에 규정된 대학의 학생으로서, 대한체육회 선수등록 규정에 따라 각 가맹경기단체에 등록한 선수이거나 협의회가 주최·주관 또는 승인하는 대회에 참가하는 동아리의 소속 선수를 말한다.
4. “예비학생선수”란 장래에 제3호에 규정된 학생선수의 신분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체육특기자”란 입학 학생 선발에 있어서 체육에 관한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에 의하여 대학이 정한 기준에 따른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할 자격과 조건을 갖춘 학생선수를 말한다.
6. “체육부”란 대학 내에서 체육활동이나 그와 관련된 업무를 관掌하는 부서를 말한다.
7. “운동부”란 대학 체육부 내의 부서로서, 경기지도자와 학생선수로 구성되어 대학스포츠 참가를 목적으로 하는 부서를 말한다.
8. “경기지도자”란 제1호에 규정된 대학의 운동부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사람(감독, 코치, 트레이너 등)으로서, 해당 대학이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9. “행사참가자”란 협의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대회 및 행사에 참가하는 사람을 말한다.
10. “운영경비”란 체육부 및 각 운동부의 운영과 학생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합숙비, 숙소관리비, 장비구입비, 훈련비, 경기출전비, 상해보험가입비, 치료경비 및 그 밖의 모든 비용 등을 말한다.
11. “초상권”이란 행사 참가자의 사진, 성명, 사인(signature), 음성, 만화, 그림, 디지털 이미지 또는 향후 개발될 신기술을 이용한 각종 이미지 등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12. “후원권”이란 협의회가 승인하는 방법에 의해 협의회 및 협의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대회·행사와 행사참가자를 활용하여 광고, 홍보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3. “상품화권”이란 협의회 및 행사참가자의 이미지나 초상 등을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에 개작하여 이용하거나 2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4. “매체권”이란 텔레비전(위성, 케이블, IPTV 포함), 라디오, 인터넷(웹캐스트 포함), 모바일 및 향후 개발될 신기술 등을 통한 모든 형태의 방송 중계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15. “상업권자”란 협의회가 승인하는 방법에 의하여 협의회의 마케팅 자산 및 지식재산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사람 및 단체 등을 말한다.

16. “아마추어리즘” 이란 대학스포츠는 교육이 기본 이념이자 우선 가치라는 전제 하에서 대 학스포츠를 교육의 연장으로 바라보며, 학생선수의 스포츠 활동은 직업적 활동이 아니며, 학생선수는 프로와 기업의 상업적 이용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는 명제에 관한 방침이자 활동을 말한다.
17. “대학경기연맹” 이란 당해 스포츠 종목에 관한 대학스포츠 선수 등록 및 경기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협의회의 설립 취지 및 목적)

협의회는 대한민국 대학스포츠를 대표하고 관장하는 국내 유일의 사단법인으로서 아래와 같은 설립 취지 및 목적을 두고 있다.

1. 대학스포츠에 관한 학사운영·재정·시설 등 주요 관심사에 대한 자율적인 협의와 연구·조정 및 상호협력을 통하여 선진형 대학스포츠 시스템을 구축한다.
2. 학생선수들이 대학스포츠 활동과 교육을 통해 정신적·육체적·사회적으로 건전한 리더십을 갖추도록 하며, 학생선수들을 전인적 스포츠지도자 및 글로벌 스포츠 인재로 육성한다.
3. 대학스포츠 발전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시행하여 우수한 학생선수의 양성과 함께 건전한 대학스포츠 문화를 조성하여 대학교육 목표 달성을 이바지한다.
4. 경기지도자와 학생선수의 대학스포츠 활동과 관련한 대학과 대학경기연맹의 제도와 행정이 대학스포츠의 이념과 가치에 부합하도록 지도·조언하고 조정한다.

제4조(이념과 가치)

제3조가 규정한 협의회의 설립 취지 및 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이 규정은 대학스포츠가 지향하고 유지하여야 할 다음과 같은 이념을 기본 가치로 하며, 협의회와 대학은 이 규정을 해석·적용하는데 있어서 대학스포츠의 이념과 가치를 기준으로 하고 지향하며 이에 반하는 어떠한 관행도 용인하지 않는다.

1. 학생선수의 학습권은 보장되어야 하며 대학·경기지도자·학생선수는 교육 의무를 준수한다.

학생선수의 신분은 선수에 앞서 학생이며, 수학(受學)은 학생의 기본적 권리이자 의무이다. 따라서 대학은 대학스포츠를 운영함에 있어서 ‘공부하는 학생선수’상을 지향하고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한다. 경기지도자와 학생선수도 학생선수가 책임 있는 사회인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대학 교육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진리를 인식한다.

2. 대학과 경기지도자·학생선수는 대학스포츠 활동에 있어서 스포츠맨십에 입각한다.

대학과 경기지도자·학생선수는 대학스포츠의 주인임을 자각하며 대학스포츠는 공명정대하게 승부를 겨루고, 상대방을 존중하며, 경기의 룰을 준수하는 것이 기본이며 이러한 스포츠맨십이 모든 대학스포츠 영역에서 지켜지도록 노력한다.

3. 대학스포츠의 아마추어리즘을 추구한다.

대학스포츠는 학생선수의 건전한 리더십 함양과 전인적 인재 육성이라는 교육적 가치를 본질로 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과 경기지도자·선수는 교육적 가치에 기반한 아마추어리즘을 유지하며 대학스포츠와 프로스포츠의 경계를 분명히 인식한다. 이를 위하여 대학스포츠에서 아마추어리즘에 위배되는 일체의 활동을 배제한다.

4. 대학스포츠는 다양성과 양성 평등을 중시하며 어떠한 불합리한 차별도 용인하지 않는다.

대학스포츠 발전을 위해서는 무조건적이고 획일적인 규제 보다는 다양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여 대학스포츠에 있어서 인격적·문화적 다양성이 인정받도록 한다. 양성 평등과 불합리한 차별 금지는 헌법적 가치임을 인식하고 대학스포츠의 조직과 운영에 있어서 어떠한 성차별도 금지되며 불합리한 차별도 배제된다.

5. 경기지도자와 학생선수의 권익을 보장한다.

개인의 존엄성 보장과 인권 보호는 헌법과 교육의 최고 가치이므로 대학스포츠에서도 이는 준수되어야 한다. 대학스포츠를 운영함에 있어서 경기지도자와 학생선수의 인권과 이익이 불합리하게 침해되지 않

도록 제반 대책을 세워야 하며 경기지도자와 학생선수의 권리 침해 문제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다.

6. 대학스포츠의 자율성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건전한 사업은 보장된다.

대학스포츠의 올바른 정상화를 위해서는 자율성이 기반되어야 하므로 대학스포츠 조직·운영과 정책 수립에 있어서 정부·프로스포츠 등 외부의 부당하고 불합리한 간섭을 배제한다. 한편 대학스포츠의 건전한 선진화를 위해서는 재정적 측면에서도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정부와의 협조를 유지하고 대학스포츠 마케팅을 강화하고 수익모델을 개발한다.

제5조(협조의무)

대학은 제3조의 협의회의 설립 취지 및 목적과 제4조의 대학스포츠의 이념과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협의회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적용범위)

- ① 이 규정은 학생선수와 경기지도자를 포함한 대학 체육부 및 운동부의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된다.
- ② 이 규정은 대학 체육부 및 운동부의 대학스포츠와 관련된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
- ③ 이 규정은 협의회가 주최·주관 또는 승인하는 대회 및 행사에 참가하는 모든 단체 및 사람에 적용된다.
- ④ 이 규정은 마케팅 사업과 관련하여 협의회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단체 및 사람에게 적용된다.

제2절 스포츠 윤리와 아마추어리즘

제7조(윤리적 행동 원칙)

대학의 경기지도자, 학생선수 그리고 체육부와 운동부 등의 관계자는 대학스포츠가 지녀야 할 아마추어리즘 및 스포츠맨십과 경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요구되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그에 관한 윤리적 기준을 충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차별금지의 원칙)

대학스포츠에 참여하는 사람은 성별, 연령, 종교, 인종, 장애,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9조(비윤리적 행위의 금지)

① 대학의 경기지도자, 학생선수 그리고 체육부와 운동부 등의 관계자는 다음과 같은 비윤리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일반 금지행위

- 가. 스포츠 도박 행위
- 나. 과도한 훈련이나 체벌, 폭행, 성폭력 및 성희롱행위
- 다. 승부 조작이나 승부 조작을 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
- 라. 금지된 약물을 복용하거나 복용하게 하는 행위
- 마. 그 밖에 공정한 스포츠 정신을 해하는 모든 위반행위

2. 학생선수 선발 관련 금지행위

- 가. 예비학생선수의 고등학교 학생생활기록부 성적을 고의로 조작하는 행위
- 나. 수학능력시험이나 검정고시와 관련한 부정행위

- 다. 부당한 재정 지원이나 제공에 관여하는 행위
- 라. 실기시험 성적의 부여나 산출과 관련한 부정행위
- 마. 그 밖에 학생선수 선발의 공정성을 해하는 모든 위반행위

3. 학사관리 관련 금지행위

- 가. 학생선수에게 부당한 학점 부여 또는 고의의 학점 조작행위
- 나. 학생선수의 수업일수 조작행위
- 다. 학생선수의 학업기록 관련 허위정보 제공행위
- 라. 그 밖에 학사관리의 공정성을 해하는 모든 위반행위

② 협의회는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징계를 할 수 있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74조에 따라 이의 및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아마추어리즘의 유지)

- ① 협의회에 선수로 등록된 학생선수는 대학스포츠 선수로서 아마추어리즘에 위배되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 만일 대학스포츠의 아마추어리즘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학생신분 유무에 관계없이 협의회 또는 대학의 결정에 따라 대학스포츠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 ② 대학에 의해 임명된 체육부장, 운동부장, 경기지도자는 대학스포츠의 아마추어리즘에 위배되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 만일 대학스포츠의 아마추어리즘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및 대학의 결정에 따라 대학스포츠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제11조(아마추어리즘 위반과 대학스포츠 참가 제한)

-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학생선수는 아마추어리즘에 위배된 것으로 보아 협의회 또는 대학의 결정에 따라 대학의 학생선수로서 협의회에서 주최·주관 또는 승인하는 대회 및 행사에 참가할 수 없다.
 1. 대학의 장의 사전 승인 없이 영리적 목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자신의 운동 능력을 이용한 경우
 2. 경기 참가를 조건으로 직·간접적으로 부당한 대가를 지급 받거나 이를 위한 제안을 수락한 경우
 3. 프로선수 또는 실업선수로 활동하기로 약정한 경우(단, 졸업 전 취업하는 학생선수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4. 대학의 장의 사전 승인 없이 영리적 목적으로 광고, 미디어에 출연하거나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 사용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거나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체육부장, 운동부장, 경기지도자는 아마추어리즘에 위배된 것으로 보아 협의회 또는 대학의 결정에 따라 협의회에서 주최·주관 또는 승인하는 대회 및 행사에 참가할 수 없다.
 1. 대학의 장의 사전 승인 없이 영리적 목적으로 학생선수나 운동부를 이용한 경우
 2. 경기 참가를 조건으로 직·간접적으로 부당한 대가를 지급받거나 이를 위한 제안을 수락한 경우
 3. 학생선수를 프로구단 또는 실업팀 선수로 활동하도록 약정한 경우(단, 졸업 전 취업하는 학생선수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4. 대학의 장의 사전승인 없이 영리적 목적으로 학생선수나 운동부를 광고, 미디어에 출연시키거나 학생 선수의 성명이나 초상 사용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거나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5. 학생선수 선발에 있어 예비학생선수의 입학을 유인하거나 그를 입학시킬 목적으로 학생선수 측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학생선수 측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령 또는 요구한 경우

제12조(성명 및 초상의 상업적 이용 금지)

협의회의 대회 및 행사에 참가한 학생선수의 성명이나 초상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단, 협의회 및 대학이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성명 및 초상의 이용)

- ① 협의회 및 대학은 대학스포츠 대회, 운영 프로그램 및 각종 행사의 홍보를 위하여 대학스포츠 마케팅 사업을 위하여 학생선수의 성명 또는 초상을 이용할 수 있다.
- ② 대학스포츠의 후원권, 상품화권, 매체권, 상업권을 보유한 자도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학생선수의 성명 또는 초상을 이용할 수 있다. 이용은 협의회 및 대학의 관련 규정 및 가이드라인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3절 협의회 및 대학

제14조(협의회의 조직)

- ① 회원대학의 총장으로 구성된 총회 및 이사회가 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총회와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협의회 전략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회원대학의 체육부 위원장, 대학경기연맹 회장, 전문가로 구성하는 집행위원회를 둔다.
- ② 협의회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의 자문기구로서 분과위원회 및 체육위원(부·실)장 협의회를 둔다.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③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무처장과 직원으로 구성된 사무처를 둔다.
- ④ 총회, 이사회, 집행위원회, 분과위원회, 체육위원(부·실)장 협의회, 사무처의 각 구성과 운영은 협의회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며, 정관 및 관련 규정에 없는 사항은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5조(협의회의 권한과 책임)

- ① 협의회는 대한민국 대학스포츠를 대표·관장하는 기구로서 대학스포츠의 기본 방침, 대학스포츠의 아마추어리즘 고양, 대학스포츠의 학사관리·운영, 대학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대학스포츠의 경기운영, 대학 체육부·운동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할 권한을 가진다.
- ② 협의회는 위 심의·의결 사항과 관련하여 회원대학으로 하여금 협의회의 제 규정과 결정을 따르도록 관리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

제16조(대학의 권한과 책임)

- ① 대학은 협의회 회원으로서 대학 학칙과 내부 규정에 의거하여 자율적으로 학생선수의 선발 및 학사관리, 체육부·운동부의 운영을 수행하며, 협의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② 대학은 협의회 소속으로서 학생선수의 선발 및 학사관리, 체육부·운동부의 운영 등 대학스포츠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협의회의 정관·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협의회의 결정을 따라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 ③ 대학은 소속 체육부·운동부의 관계자 및 학생선수·경기지도자가 대학스포츠 활동에 있어서 협의회 규정을 준수하고 협의회 결정에 따르도록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

제17조(대학경기연맹과의 관계)

- ① 협의회는 대학스포츠의 정상화와 선진화를 위하여 종목별 대학경기연맹과 원활하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협의회 사업에 참가하는 대학경기연맹에 대하여는 사업의 공동 수행 또는 사업 수익의 배분 등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 ② 협의회는 대학경기연맹도 대학스포츠의 정상화와 선진화를 위한 동반자임과 동시에 책임있는 일원임을 고려하여 대학경기연맹의 구성과 운영에 적극 참여하고 대학경기연맹의 제도와 행정이 협의회 정책과 규정에 부합하도록 적극 지도한다.

제4절 학생선수의 선발 및 학사관리

제18조(선발절차의 공정성)

학생선수의 선발은 그 절차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대학은 공정하고 투명한 학생선수 선발에 필요한 규정과 절차를 운영하며, 체육부장·운동부장·경기지도자 등 대학스포츠 관계자가 학생선수 선발에 있어서 협의회 및 대학의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한다.

제19조(입시비리 행위의 금지)

① 대학은 예비학생선수의 입학을 유인하거나 그를 입학시킬 목적으로 직접 또는 동문·후원 등의 관계를 갖고 있는 단체나 개인을 통하여 예비학생선수나 그 가족, 또는 소속 학교에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하거나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하게 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1. 각종 금품 또는 경제적 이익의 제공
2. 예비학생선수의 끼워넣기식 선발
3. 기숙사나 단체 합숙용 공용주택과 같은 통상의 제공 범위를 넘어선 주거 등에 대한 무상이용의 제공
4. 예비학생선수의 학업자격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학업지원서비스의 제공
5. 예비학생선수 소속 학교에 대한 스폰서십 제공
6. 그밖에 학생선수 선발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이익제공

② 협의회는 제1항의 입시비리 행위가 행하여진 대학에 대하여는 체육특기자 입학 선발 인원 또는 대회 출전에 제한을 둔다.

제20조(입시 전 운동능력 측정의 금지)

대학은 공개 시험 이전에 대학 안팎의 모든 장소에서 예비학생선수에 대한 운동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캠프나 클리닉을 주최할 수 없다. 다만 외부기관이나 조직이 주최하는 행사가 대학 밖에서 실시되고, 또한 그 행사가 모든 대학에 공개되는 경우에는 그 예외로 한다.

제21조(입학전형)

① 체육특기자 입학시험의 전형요소는 수학능력시험성적, 고등학교학생기록부, 실기시험성적, 면접시험성적, 경기실적점수 등으로 한다. 단 검정고시를 통하여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취득한 자는 검정고시성적을 내신 성적으로 대체하고, 그 반영비율은 별도로 정한다.

② 경기실적 점수는 각종 국제대회나 전국대회의 경기성적을 대회의 규모나 중요도 등에 따라 정해진 비율로 가점할 수 있다.

③ 유관기관의 기준에 따라 협의회가 마련한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에 관한 객관적·합리적 기준(표준요강)에 따라, 대학은 체육특기자 입학전형에 있어서 수학능력시험성적과 내신성적을 일정수준 또는 일정비율 이상 반영하여야 하며, 지원서 등 불합리한 제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22조(학업기준)

대학은 학생선수의 학업기준에 관하여 일반학생과 동일한 방침 및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학스포츠의 제도적 환경과 실정을 고려하여 학생선수에 대한 합리적인 학업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으나, 절진적으로 일반학생의 학업기준에 근접하도록 한다.

제23조(수업일수와 보충)

① 대학은 학생선수가 국제대회 또는 전국규모 이상의 대회에 출전하여 수업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 학생과 동등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대학은 대회시즌에 따른 수업 공백을 보충하기 위하여 사전에 계절 학기 강의를 개설하거나 시즌 후 보충수업을 실시한 경우에 협의회 요청 시 그 구체적인 내용과 결과를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외국체류 학생선수의 학점이수)

① 국가대표선수로 선발되어 부득이하게 외국에서 장기간 체류하면서 연습과 경기에 임해야 하는 학생선수는 휴학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학생선수는 소속 대학과 체류지역 대학 간의 양해 아래 동일 또는 유사 교과목에 대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제25조(학점관리와 불이익처분)

① 학생선수는 직전 2개 학기 학점 평균이 C⁰ 이상을 취득하여야 협의회가 주최·주관 또는 승인하는 각종 대회의 모든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

② 학생선수가 학칙에서 정한 성적이나 출석 일수의 미달로 유급된 경우에는 다음 학기 협의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대회의 모든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단, 부상이나 질병, 가정빈곤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유급된 자는 협의회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선수활동의 제한에 대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③ 대학은 학생선수의 학기별 성적 현황을 협의회 요청 시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재학 중 프로·실업 진출과 학생선수 자격의 상실)

학생선수가 졸업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재학 중 또는 휴학 중에 프로구단이나 실업팀에 스카우트되어 각 종목의 협회나 연맹의 소속 선수가 되면 해당 대학의 학생선수 자격을 상실한다. 이 경우에도 대학의 일반학생으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된다.

제27조(협의회 비승인 대회의 참가 금지 등)

① 학사관리의 정상화를 위하여 대학은 협의회가 승인하지 않은 대회에는 소속 운동부 및 학생선수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9.>

② 학사관리의 정상화 및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대학은 국제대회·전국체육대회 참가 등 불가피한 사유 이외에는 학기 중 대회에 소속 운동부 및 학생선수의 참가를 최대한 지양한다. <개정 2016. 1. 29.>

제28조(운영세칙)

학생선수선발 및 학사관리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그 밖의 사항은 해당 학사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5절 경기운영

제29조(대회 및 경기운영 원칙)

① 협의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대회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학사관리의 정상화를 위하여 학기 중 리그 대회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가 국제대회를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우에는 학기 외 또는 학기 중 토너먼트로 운영할 수 있다.

② 대학은 훈련, 연습경기, 대회출전 등 경기에 관련된 일정으로 인하여 학생선수로서의 소양과 자질함양에 필요한 학습권이 제한받지 않도록 한다.

③ 협의회는 대회 및 경기운영으로 인하여 학생선수의 학습권 침해 및 학사관리에 피해가 우려될 경우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30조(대회 일정)

대회 및 경기 일정은 회원대학 상호 간의 학사일정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제31조(경기 방식)

협의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리그 대회의 경기 방식은 상호방문(홈앤파웨이)방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종목 특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32조(경기 장소)

① 경기 장소는 종목별 대학경기연맹이 승인한 경기장에서 개최하되 홈 경기장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승인된 경기장에서 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해당 대학경기연맹과 협의하여 별도 지정된 경기장에서 개최할 수 있다.

② 불가피한 사정으로 개최장소를 변경할 경우, 해당 종목별 리그 대회규정에 따른다.

제33조(대회 주최·주관)

협의회는 리그 대회의 주최자 지위를 갖는다.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에 해당 종목 대학경기연맹에게 학기 중 리그 대회의 주관자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

제34조(리그 방식)

학기 중 리그 대회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종목별 리그 대회규정에 따른다.

제35조(안전관리)

① 모든 경기는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도록 준비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협의회는 해당 종목 대학경기연맹 등 경기 진행 관계자와 긴밀히 협의한다.

② 홈팀의 대학은 경기지도자, 학생선수, 경기운영 요원 등 경기 참가자 및 관중의 안전과 경기장 질서유지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진다.

제36조(운영세칙)

그 밖의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해당 연맹과의 협의를 거쳐 협의회 경기지원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6절 체육부·운동부의 운영 및 경기지도자의 채용

제37조(체육부의 설치 등)

① 대학스포츠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각 대학에 체육부를 두고, 대학의 장의 자문기구로 체육위원회를 둔다. 단, 각 대학의 여건에 따라 체육부가 체육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으며, 체육부의 명칭·체육부장(위원장)의 자격 등은 대학의 장이 정한다.

② 체육부는 체육부장, 각 운동부의 부장, 경기지도자로 구성한다.

③ 체육부장은 운동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중에서 대학의 장이 임명하고, 각 운동부장 및 경기지도자는 체육부장이 추천하고 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의 장이 임명한다.

④ 체육부장, 운동부장 및 경기지도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체육부장 : 체육부 대표 및 운영 총괄
2. 운동부장 : 체육부장의 보좌 및 각 운동부의 대표 및 운영관장
3. 감독 : 소속 학생선수의 관리 총괄
 - 가. 학생선수의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
 - 나. 학생선수의 훈련계획 수립·시행
 - 다. 학생선수의 학사지도 관리
 - 라. 학생선수의 대회 참가에 관한 사항
 - 마. 학생선수 합숙소의 관리에 관한 사항
 - 바. 학생선수관리 상황의 운동부장 및 체육부장에 보고
4. 코치 : 감독 보좌 및 학생선수의 체력관리·경기지도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이외에 체육부에 두는 각 운동부 및 경기지도자의 편성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각 대학의 체육위원회의 자문을 통하여 대학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38조(경기지도자의 자격)

① 대학의 장은 각 운동부의 경기지도자로서 종목별로 국민체육진흥법상의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채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용하는 체육지도자는 1급 또는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③ 대학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채용한 경기지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제1항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의 제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법령을 위반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경기 또는 훈련을 게을리하거나 고의로 피하는 경우
3. 별지 제2호 서식에서 규정하고 있는 윤리서약에 위반한 경우
4. 질병 또는 사고로 훈련 및 경기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병역법」에 따른 입영대상자로서 입영 통지서가 나온 경우
6. 대학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부나 운동부를 해체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의 경우에 준한다고 대학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체결에 있어 채용계약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채용계약서의 양식 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단, 교수나 외부 기관 파견자가 경기지도자를 겸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기지도자는 체육부장에게 신고하고 체육 지도활동 등을 할 수 있다.

⑥ 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경기지도자와의 계약 기간 만료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직무수행 실적
2. 복무 태도
3. 체육부의 운영 성과

제39조(신분보장 및 급여 등)

① 경기지도자는 정규직으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임기가 3년이 되도록 보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대학의 장은 경기지도자에 대한 안정적 처우 및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급여 및 수당을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급여 및 수당의 지급액,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학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40조(운영경비)

- ① 대학의 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체육부와 각 운동부의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체육부 및 각 운동부가 제1항에 따른 소요경비를 지원받으려면 필요한 경비내역을 산출하여 대학의 장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운영경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내역을 대학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대학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체육부 및 각 운동부의 필요경비에 대한 청구를 받으면 세부내역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에 보고받은 집행내역을 검사한다.

제41조(합숙소의 설치·운영)

- ① 학생선수의 기량향상과 편의도모 등을 위하여 체육부에 선수합숙소를 둘 수 있다. 다만, 별도의 선수합숙소가 없는 경우에는 대학기숙사의 일부를 선수합숙소로 할 수 있다.
- ② 선수합숙소에는 대학의 장이 지정하는 합숙소관리인과 학생선수 급식에 종사하는 조리사를 둘 수 있다.
- ③ 합숙소의 관리인은 학생선수들의 합숙소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합숙소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합숙은 학생선수의 학업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장기간에 걸쳐 할 수 없으며, 대학의 체육부는 합숙소에서 구타행위 그 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⑤ 대학은 방학기간이나 종목별 시즌 종료 후 다음 시즌 개시 전에는 일정 기간 동안은 합숙 훈련을 하지 않도록 한다.

제42조(학생선수훈련 및 대회 출전 등)

- ① 체육부 또는 각 운동부 감독은 운동부 및 학생선수에 대한 훈련계획과 각종 대회의 출전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체육부장의 승인을 받되, 훈련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학생선수의 학교수업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② 감독은 제1항에 의한 훈련계획에 따라 학생선수를 훈련시켜야 하며, 각종 대회에 출전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체육부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제43조(경기지도자의 의무 등)

- ① 경기지도자는 건전한 경쟁 스포츠 환경조성을 위하여 학생선수의 페어플레이 정신을 함양시키고 학생선수가 스포츠맨십을 발휘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② 경기지도자는 계약 시 작성하여 제출한 윤리서약(별지 제2호 서식)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 등 불이익처분을 받을 수 있다.
- ③ 경기지도자는 학생선수의 안전관리와 도핑금지 등을 위해 협의회에서 실시하는 스포츠법 및 스포츠윤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44조(경기지도자에 대한 포상)

대학은 경기지도자로서 학생선수들의 모범이 되고, 학생선수들을 교육자적 양식과 열정으로 지도하여 우수한 경기성적을 나타내 대학스포츠와 소속 대학의 명예를 높인 경우에는 포상할 수 있다.

제45조(경기지도자 관리지침의 제정)

대학의 장은 경기지도자의 관리 효율성과 합리성 제고를 통한 대학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해 경기지도자 관

리지침(별지 제3호 서식)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절 재정 및 마케팅

제46조(재정확보수단)

협의회의 수입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회원대학의 회비
2. 정부의 지원금 <개정 2016. 1. 29.>
3. 기부·후원금
4. 사업 활동으로 얻는 수익금 <개정 2016. 1. 29.>
5.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6. 기타수입 <개정 2016. 1. 29.>

제47조(마케팅 사업영역)

① 협의회는 재정의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후원권에 관한 사업
 - 가. 후원권자 유치와 계약 업무
 - 나. 후원권자 제공 권리 및 활용범위 조정업무
2. 상품화권에 관한 사업
 - 가. 상품화권자 유치와 계약 업무
 - 나. 상품화권자 제공 권리 및 활용범위 조정업무
3. 매체권(중계방송권을 포함)에 관한 사업
 - 가. 매체권자 유치와 계약 업무
 - 나. 매체권자 사용권 부여 범위에 대한 결정
 - 다. 행사 참가자가 출연하는 방송 프로그램 등에 관한 업무
 - 라. 경기 및 행사참가자와 관련된 영상, 사진 등의 제작과 판매 등에 관한 업무
4. 경기장과 스포츠시설에 관한 사업
 - 가. 주최 대회의 입장권에 관한 업무
 - 나. 스포츠시설을 활용한 마케팅 업무
 - 다. 경기장 이벤트 및 관련 행사 등의 업무
5. 마케팅자산의 보호와 관리에 관한 사업
 - 가. 마케팅자산의 소유권에 관한 업무
 - 나. 마케팅자산의 보호에 관한 업무
 - 다. 마케팅자산의 부당 사용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업무
 - 라. 매복마케팅 근절에 관한 업무
6. 그 밖의 이사회에서 정한 마케팅에 관한 사업

② 상업권자는 협의회와의 계약에 따라 제1항 각 호와 관련한 상업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48조(마케팅 사업권리)

- ① 협의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대학스포츠 대회 및 행사와 관련한 마케팅 사업의 권리는 협의회의 소유이며, 협의회는 마케팅 사업권을 계약을 통해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② 협의회의 마케팅 사업권과 관련하여 정관 및 다른 규정에서 달리 정한 것이 없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③ 이 규정은 협의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대학스포츠 대회 및 행사의 마케팅에 관하여 협의회, 대학경기연맹, 대학, 행사 참가자, 상업권자, 대회 및 행사 관람자(관중 포함), 그 밖의 협의회의 마케팅 자산의 운용과 관련 있는 사람 및 단체에 적용된다.

제49조(후원권의 내용)

- ① 협의회는 후원자 또는 후원자의 브랜드를 일반 대중에게 노출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
- ② 협의회로부터 권한을 받은 후원자는 협의회의 관련 규정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독점후원, 타이틀후원, 용품후원 등의 방식으로 광고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제50조(상품화권의 내용)

① 협의회는 협의회 마크나 심볼, 마스크트가 새겨진 다음 각 호 제품의 상업적 이용에 대한 독점적 권리 를 가지며, 필요한 경우에 계약을 통해 제3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1. 공, 글러브 등 스포츠 용품
2. 모자, 옷, 신발 등의 의류물품
3. 컵, 인형, 텁블러, 엽서 등의 기념품
4. 그 밖의 제1호와 제3호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

② 협의회는 대학스포츠 마케팅을 통일적·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학의 마크나 심볼, 마스크트 및 학생선수의 초상·성명을 활용한 전항 각 호 제품의 상업적 이용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및 총회의 결의에 따른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51조(매체권과 다양한 마케팅 영역)

- ① 협의회는 협의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대학스포츠 대회 및 행사 등에 대하여 신문, 출판, 방송(라디오, 위성 및 케이블 TV 등), 인터넷(웹캐스트, UCC 등), 모바일(SNS 등) 등의 매체를 통한 마케팅활동을 할 수 있다.
- ② 중계방송에 대한 권리에 대하여는 협의회가 배타적으로 가지고 있으며, 제3자에게 판매, 양도 및 그 권리의 행사를 대행시키는 등 협의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관리, 처분 및 양도할 수 있다.

제52조(경기장과 스포츠시설에 관한 사업내용)

- ① 협의회는 스포츠 대회를 주최함에 있어 입장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입장권 판매사업
 2. 제3자를 통한 대행
- ② 협의회는 스포츠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시설물을 이용한 광고
 2. 영상을 통한 광고
 3. 그 밖의 다양한 매체를 통한 광고
-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이벤트 행사를 할 수 있다.
 1. 경기시작 전 학생선수의 개인기량 선사
 2. 경기 중 치어리딩 퍼포먼스와 대학 대표 음악 벤드의 공연 이벤트
 3. 은퇴 OB선수들과 현역선수 간 친선경기
 4. 그 밖의 대학스포츠를 부각시킬 수 있는 각종 이벤트 행사

제53조(행사참가자 권리의 귀속 및 사용)

- ① 다음을 이용한 영리활동에 관한 권리는 협의회에 귀속한다.
 1. 학생선수와 그 밖의 행사참가자의 초상, 이미지 등

2. 협의회가 지급한 공식복장을 착용한 초상, 이미지 등

3. 경기장면, 연습장면, 인터뷰 장면 등

② 상업권자는 협의회가 허락한 범위 내에서 제1항에 관한 초상이나 장면 등을 각종 사업에 이용할 수 있다.

③ 학생선수와 그 밖의 행사 참가자가 협의회의 승인 없이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한 경우 협의회 정관, 상별위원회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제54조(협력 및 규정준수)

① 대학은 해당 종목의 스포츠 발전을 위하여 협의회의 권리활용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대학은 협의회가 정한 내부규정에 따라 협의회 마크, 로고 및 기타문장 등 등록마크를 사용해야 한다.

제55조(마케팅 수익 사용과 배분 원칙)

① 마케팅사업을 통하여 확보된 수익은 협의회의 재원충당과 회원대학 운동부 운영지원 또는 학생선수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협의회는 수익을 배분함에 있어 운동종목,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배분한다.

제56조(재정의 사용)

① 협의회는 조성된 재원으로 다음 각 호의 개인 및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1. 학생선수
2. 회원대학
3. 각 대학경기연맹
4. 그 밖의 행사참가자 또는 이해관계자

② 협의회는 조성된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수행
2. 대학 운동부의 육성과 발전
3. 학생선수의 장학금, 의료비 등 복지
4. 각종 대회의 참가경비 보조
5. 재해 및 상해에 대한 보험
6. 도핑 테스트 비용
7. 스포츠시설에 대한 제 경비
8. 경기지도자의 복지
9. 그 밖의 협의회 이사회에서 정한 사항

③ 협의회는 연도별 수입지출 내역 등 회계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57조(지원에 대한 요건)

① 학생선수가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학생선수로서의 자격요건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② 협의회는 개인 및 단체에 관한 재정적 지원범위에 대하여는 정계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제한을 둘 수 있다.

③ 학생선수 또는 회원 대학의 체육부·운동부 관계자 및 경기지도자가 협의회와 이 규정이 요구하는 아마추어리즘을 위반한 경우에는, 협의회는 해당 대학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보류하거나 감축할 수 있다.

제58조(협의회의 사전승인과 권리침해금지)

① 이 규정에서 정하는 마케팅에 관한 협의회의 권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협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

야 한다.

② 협의회는 사전승인 없이 권리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금지 및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제59조(운영 세칙)

대학스포츠운영과 관련한 재정지원 및 마케팅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재정·마케팅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8절 포상 및 징계

제60조(일반원칙)

- ① 포상 및 징계를 결정하는 때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징계는 그 협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고, 징계대상자에게는 적법한 절차를 보장하여야 한다.
- ③ 이 규정에서 정한 징계대상 및 종류 이외에는 징계할 수 없다.

제61조(상별위원회의 구성)

포상 및 징계를 위한 위원회는 협의회 정관 제27조 제1항 제5호에 의해 설치된 상별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제62조(상별위원회의 소집과 의결)

- ① 상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1. 상별 사유가 발생하여 위원장이 소집을 요청한 때
 2. 이사회 또는 상별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3조(상별위원의 임기)

- ① 상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될 수 있다.
- ② 상별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한 결원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③ 상별위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는 그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64조(상별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① 상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조사 및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상별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상별위원이 해당 사안의 대상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상별위원이 해당 사안에 대하여 대상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② 상별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의결에 이해관계 있는 사람이 해당 상별위원에게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상별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65조(표창의 대상)

- ① 협의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대회 및 행사에서 탁월한 기량을 발휘한 학생선수에게는 표창할 수 있다.
- ② 협의회의 운영에 공로가 큰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표창할 수 있다.
 - 1. 임원 등으로서 오랜 기간 협의회의 운영에 공헌한 사람
 - 2. 학생선수의 지도, 육성에 공헌한 사람
 - 3. 심판원으로서 오랜 기간에 걸쳐 경기 운영에 공헌한 사람
 - 4. 학생선수로서 협의회의 명예를 높이는데 공헌한 사람

제66조(표창의 절차)

- ① 표창 대상자는 상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제65조 제1항의 대회의 경기력과 관련한 표창에 대해서는 상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표창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서 결정된 표창의 시기 및 장소는 협의회 회장이 정한다.

제67조(징계 심의의 대상)

상별위원회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징계 심의를 할 수 있다.

- 1. 이 운영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 2. 협의회가 주최·주관하거나 승인하는 각종 대회에서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 3. 그 밖에 비위 사실이 있다고 상별위원회가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8조(징계의 종류)

① 학생선수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 경고
- 2. 표창취소
- 3. 출전정지

② 회원대학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

- 1. 경고
- 2. 표창취소
- 3. 제재금
- 4. 출전정지
- 5. 체육특기자 입학 선발 인원 제한
- 6. 회원 자격박탈

③ 경기지도자 및 심판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

- 1. 경고
- 2. 표창취소
- 3. 제재금
- 4. 출전정지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각 징계는 병과할 수 있다.

⑤ 제재금은 부과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재금의 대납은 허용되지 않으며, 납부 기일을 도과한 미납에 대해서는 다른 징계를 병과할 수 있다.

⑥ 징계유형별 징계 기준은 상별위원회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⑦ 다른 대학리그 운영규정에 징계에 관한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다만 상별위원회에서 특별히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 조에서 정한 징계를 부과할 수 있다.

제69조(사안의 조사)

- ① 상별위원회는 정계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 앞서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조사는 조사위원을 임명하여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조사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③ 조사위원은 조사 결과를 상별위원회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조사에 필요한 경비는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제70조(출석요구)

- ① 상별위원회가 정계대상자의 출석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출석 통지가 상별위원회 개최일 1주일 전에 정계대상자에게 도달하도록 한다.
- ② 정계대상자의 주소불명이나 기타 사유로 출석 통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출석 요구서를 정계대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교부하게 할 수 있다.
- ③ 상별위원회는 정계대상자가 불출석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진술권 포기 각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 기타 제반 자료에 따라 정계 심사를 할 수 있다.
- ④ 정계대상자가 정당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 기타 제반자료에 따라 정계 심사를 할 수 있다.
- ⑤ 정계대상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상별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정계대상자는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상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제71조(심문과 진술권)

- ① 상별위원회는 정계대상자에게 협의내용에 대하여 심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 ② 상별위원회는 정계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정계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 ③ 정계대상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제3자에 대한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별위원회는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2조(정계의 양정)

상별위원회는 정계대상자의 비위의 유형 및 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의 소행, 인품, 공적, 반성의 정도,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정계를 정하여야 한다.

제73조(정계의 통보)

- ① 상별위원회가 정계를 의결한 때에는 자체 없이 서면으로 정계대상자 및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정계통보서에는 정계 이유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정계 재심사 및 이의신청의 기한과 방법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제74조(이의 및 재심사 신청)

- ① 정계결과에 이의가 있는 정계대상자는 이사회에 이의 및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이의 및 재심사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이유와 입증 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③ 이의 및 재심사 신청은 정계 의결한 정계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④ 이사회는 이의 및 재심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정계대상

자 및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리 기한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 이의 및 재심사 신청에 대한 이사회 결정은 종국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제75조(징계의 효력 발생 시기)

① 상별위원회의 징계는 징계대상자에게 통지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상별위원회의 징계에 대하여 징계대상자의 이의 및 재심사 신청이 있다 하더라도 그 징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아니한다.

제76조(징계의 면제 또는 경감)

징계를 받은 사람의 반성 정도가 특별히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사회는 징계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제77조(비밀준수의무)

상별위원회의 위원 및 이사회의 이사는 징계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78조(징계사유 시효)

징계심의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79조(기록 및 보고)

① 상별위원회가 심의 ·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표할 수 있다.

② 회의록에 상별위원회의 의사진행 및 결과를 기록하며, 위원장 및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③ 상별위원회는 심의 · 결정 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0조(절차에 있어서 통신수단)

이 규정에서 통지나 통보는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을 대신하여 팩스나 전자메일 등의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제81조(운영세칙)

상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27조 제2항은 이 규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제25조는 이 규정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1조 제3항에서 규정한 입학전형 기준은 2018학년도 입시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6. 1. 29.>

② (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 당시 대학의 체육부 또는 운동부에서 경기지도자로 활동하는 감독 및 코치는 이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③ (조치의무) 이 규정을 시행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각 대학은 제39조,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경기지도자 채용계약서 서식

경기지도자 채용계약서

제1조(계약당사자) ○○대학교 총장 “갑”과 경기지도자(체육감독, 체육코치)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채용계약을 체결한다.

갑: ○○대학교 총장 ○○○

을: 이름 : ○○○(주민등록번호:)

주소:

제2조(성실의무) “갑”은 “을”의 근무여건 개선과 복지에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고, “을”은 채용계약에 따라 “갑”의 지시에 응하여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한다.

제3조(근무내용) “을”은 다음과 같이 “갑”이 정하는 내용으로 임하여야 한다.

1. 직무: ○○대학교 체육부 경기지도자(체육감독, 체육코치, 트레이너)
2. 근무 장소: ○○대학교 체육부 훈련장, 기타장소 ()
3. 담당 업무
 - 가. 체육부 훈련지도 및 관리
 - 나. 훈련 시 소속 학생선수 안전지도
 - 다. 소속 학생선수의 학사지도 관리
 - 라. 경기대회 참가, 선수의 발굴 및 육성 등
 - 마. 선수합숙소 관리 등

제4조(계약기간) “을”의 계약기간은 201 .부터 201 . 2. 28.까지로 한다.

제5조(근무일)

- ① 경기지도자의 근무일은 근무하는 대학의 공휴일을 제외한 날로 한다.
- ② 대학의 장은 근무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계약기간 중에는 시합출전, 합동강화훈련, 합숙훈련 등이 사유가 있을 시에는 특별한 날짜를 정하여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근무시간) 경기지도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공립학교는 지방자치단체의 복무에 관한 조례)을 준용하되, “갑”이 따로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의한다.

제7조(보수)

- ① 경기지도자의 보수는 급여와 수당을 포함하여 월급 () 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한다.
- ② 월급은 상여금, 각종 수당, 복리 후생적 급여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 하되,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8조(퇴직금) “갑”은 “을”이 계약기간 1년 이상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 1년에 대하여 연봉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의 해지) 대학의 장은 경기지도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근로계약을 중도해지하거나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때
2.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에 손해를 입힌 때
4. 소속 체육부의 해체 및 조정, 예산의 감축 등으로 계약의 해지가 불가피한 때
5. 금품·향응 수수, 회계처리 부적정 등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 때
6. 체벌, 폭언 등 비교육적 지도방법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7. 선수육성 소홀 및 적정 선수 수 미확보로 팀 운영에 어려움을 야기한 때
8. 대학의 장의 허가 없이 선수지도에 지장을 초래하는 타 직무를 겸했을 때
9. 기타 대학스포츠 규정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제10조(재계약)

- ① 근로계약은 2년 단위로 재계약한다.
- ② “갑”은 “을”이 제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을”의 의사를 존중하여 재계약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의 변경) “갑”은 계약기간 중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을”과 합의하여 채용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손해배상) “을”이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갑”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을”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기타) 상기 계약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위와 같이 채용계약을 체결한다.

201 년 00 월 00 일

갑	을
○ ○ 대학교 총장 ○ ○ ○ 직인	○ ○ 대학교 체육부 경기지도자 ○ ○ ○
주소: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명: 인

[별지 제2호 서식] 경기지도자 윤리서약서

경기지도자 윤리서약서

소속:

직위 :

이 를 :

위 본인은 ○○대학교의 경기지도자로서 ○○대학교의 창학 정신과 교육 목표를 준수하고, 아울러 스포츠를 통한 대학스포츠의 발전과 국가의 스포츠 발전에 이바지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다음의 윤리강령을 준수할 것임을 확인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대학교 징계절차 등 제반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윤리강령]

1. 대학교의 정관 및 학칙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한다.
 2. 직위를 남용하여 입시부정 및 체육부 및 각 운동부 활동과 관련하여 학부형을 통한 금품수수 등의 부정한 행위를 일체하지 않는다.
 3. 선수들을 훈련시킴에 있어서 교육적으로 대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나 가혹행위(비인격적 대우 및 언어폭력 포함)를 하지 않는다.
 4. 선수들이 성적 유혹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
 5. 경기를 전후하여 담합, 도박, 심판매수, 도핑 등 어떠한 부정이나 비위를 범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 ○ 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경기지도자 관리지침

경기지도자 관리 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대학스포츠의 활성화와 대학교육 정상화를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9조 및 대학스포츠운영규정 제4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대학스포츠 경기지도자의 관리 효율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2. 방침

- (1) 대학스포츠 경기지도자의 구체적인 관리 · 운영기준은 이 지침에 의한다.
- (2) 대학스포츠 경기지도자는 각 대학의 장이 대학의 실정에 맞게 운영하되,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 (3) 각 대학에 경기지도자 심사위원회를 두어 채용과 재계약 시 적격여부를 심사하고 징계 및 해임의 기준을 마련한다.
- (4) 「근로계약」은 소속 대학의 장과 경기지도자 간에 체결하되, 표준채용계약서에 의한다.

3. 경기지도자 심사위원회 구성

- (1) 위원장: 대학의 장
- (2) 부위원장: 체육부장
- (3) 위원: 체육위원회 위원 및 교수 5인

4. 대상자 심사

- (1) 대상: 정기 계약 대상자와 비정기 계약 대상자로 구분한다.
 - 1) 정기계약 대상자 심사
정기계약 대상자는 매년 1월에 심사한다.
 - 2) 비정기 계약 대상자 심사
 - 가) 운동부의 신설로 경기지도자가 필요한 경우
 - 나) 결원(중도퇴직)이 생겼을 경우
 - 다) 신규 채용 시
- (2) 신규 계약 대상자의 자격요건
 - 1) 신규 계약 대상자의 자격요건은 지도자로서의 자질(품성, 인격, 지도력 등)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감독, 코치: 전문스포츠지도사 1급 또는 2급 이상
다만, 국가 대표선수 경력이나 시 · 도 대표로 3년 이상의 경력 또는 직접 지도하여 전국대회에서 입상(금, 은, 동)한 경력이 있는 자는 우대한다.
 - 2) 결격사유는 일반직공무원 임용 기준을 준용한다.
- (3) 재계약 심사 제외 대상

- 1) 근무에 불성실한 자, 폭력행사 등의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한 자
- 2) 소속 팀의 해체 및 조정, 예산의 감축 등의 사유로 계약의 해지가 불가피할 때에는 재계약의 심사가 제외될 수 있음
- (4) 경기지도자 심사위원회 심사절차
 - 1) 경기지도자의 심사는 경기지도자 심사위원회에서 한다.
 - 2) 의사정족수는 재적 의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정족수는 출석의원과 반수 이상으로 의결한다.
 - 3) 심사위원회 회의 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자료를 보존한다.

5. 계약체결

- (1)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 (2) 정기 계약대상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매년 3월 1일부터 그다음 해 2월 말 까지 해당 대학의 장과 계약을 체결한다.
- (3) 비정기 계약 대상자는 계약일로부터 그다음 해 2월 말까지(단기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기간 명시) 해당 대학의 장과 계약한다.

6. 해임절차

- (1)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1) 근무에 불성실한 자
 - 2)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한 자
 - 3) 건강상의 사유로 업무 수행에 장애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 (2) 해임을 하고자 할 때는 대학의 장이 해당 경기지도자에게 1차 경고를 하고,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개선이 없을 경우에는 해임을 하되, 최종 해임을 하고자 할 때는 심사위원회를 거쳐 30일 전에 문서로 그 시기와 사유를 경기지도자에게 통지한다.
- (3) 해임자에게 퇴직금의 발생사유가 있는 경우 적시에 지급한다.

7. 비치 장부

소속 대학에서는 인사(인사발령대장, 인사기록카드 등) 및 복무관련 장부(근무 상황부, 훈련계획서, 지도실적카드 등)를 학교의 설정에 맞게 제작하여 비치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8. 복무 및 보수

- (1) 복무
 - 1) 근무일: 근무학교의 공휴일을 제외한 날로 한다(단, 근무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 중에는 시합출전, 합동 강화훈련, 합숙훈련 등의 사유가 있을 시 특별히 날짜를 지정하여 근무를 요구할 수 있다.)
 - 2) 근무시간: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준하되, 대학의 장이 따로 정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에 의한다.
 - 3) 훈련일지 및 훈련계획서 작성: 체육부장에 보고 및 결재

(2) 보수

- 1) 보수는 봉급과 수당으로 한다.
- 2) 대학의 장은 봉급과 수당 등 보수를 지급함에 있어 그 처우를 우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9. 임무

(1) 감독

- 1) 학생선수의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
- 2) 학생선수의 훈련계획 수립·시행
- 3) 학생선수의 학사지도의 관리
- 4)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에 관한 사항
- 5) 학생선수 합숙소의 관리에 관한 사항
- 6) 학생선수관리 상황의 운동부장 및 체육부장에 보고

(2) 코치

- 1) 감독 보좌(감독이 없을 경우에는 코치가 감독의 업무를 수행한다.)
- 2) 학생선수의 체력관리 지도·경기지도
- 3) 훈련일지 및 선수 훈련 카드 기록 및 관리

10. 신규 계약 추천 대상자 구비서류

- (1) 자기소개서
- (2) 경기단체장 또는 교수 추천서 1부
- (3) 경기지도자 자격증 1부
- (4)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5) 이력서 1부
- (6) 주민등록 등(초)본 1부

11. 경기지도자의 채용계약서

- (1) 경기지도자의 근무는 대학의 장과 경기지도자 간에 체결하는 근로계약에 의한다.
- (2) 채용계약서에 포함될 사항
 - 1) 근로의 내용(직무, 근무 장소, 담당 업무 등)
 - 2) 계약기간, 근무일 및 근무시간
 - 3) 보수, 퇴직금
 - 4) 계약의 해지, 재계약, 책임의 한계

부칙

이 지침은 201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